

「구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5월 2일

나. 발 의 자: 양진오·김원섭 의원(2인)

다. 찬 성 자: 김근한, 김낙관, 김재우, 김춘남, 소진혁, 신용하,  
장미경, 장세구, 정지원 의원(9인)

라. 회부일자: 2025년 5월 7일

마. 상정일자: 2025년 5월 15일

제2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양진오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부족한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  
근로자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 
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

## 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 수립(안 제4조)
-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(안 제5조)

## 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제2호
  - 「출입국관리법 시행령」 별표1의2 제20호의2
  -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5. 5. 8. ~ 5. 13.) 결과 의견없음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호 규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농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안 제4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, 현황 관리 등이 포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토록 하여 농촌 인력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계획적인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- 또한, 안 제5조에서 외국인 고용 시 발생하는 출입국 관련 비용 지원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 소규모 영세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- 다만, 관련 부서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지원할 시, 국내 농업근로자 및 기타 고용 형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, 지원 절차 또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

- 안 제2조제3호 및 제5조제1항제4조의 '공공형 계절근로'의 경우에 지역농협 등 구미시가 선정한 사업 대상자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부담하게 되는 제반 비용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.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